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 자격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무주택자를 말함)으로서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이 선정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5호 및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지역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②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3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연구소만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 나. “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기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약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약국을 말한다. 라. “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말한다. 마. “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를 말한다.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대구경북 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 확정자 및 예비 대상자가 선정되어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3.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당첨 확정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청약 미신청시 계약불가) 4.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소형·저가주택 소유 시 유주택자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경쟁 시 우선순위	<p>대상 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기관추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추천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에 거주하는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의 규정에 준용하며,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정되어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에 해당기업 등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직하는 경우. 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여부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2.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그 주택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합니다. 3.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신청은 특별공급 청약접수 전 사업주체에 신청서를 제출 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의 대상자 적합여부 확인을 받은 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4.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라목에 의거 “당첨자”로 간주되며, 신청당시 제출한 서류 및 주택소유 등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 당첨자로서 일체의 권리는 소멸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명시된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5.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신청자격에 대한 심사 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 당첨자로서의 일체 모든권리는 소멸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		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	재직회사	• 재직회사 발급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② 사업자등록증 1부	재직회사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③ 재직증명서 1부	재직회사	• 소속업체 인감 날인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내 재직기간 명시 (필수)
	○		④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본인	• 소속업체 인감 날인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 이상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		⑤ 주택특별 공급신청서	-	• 소속업체 인감 날인 제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		⑥ 무주택서약서	-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		⑦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		⑧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	• 이름, 청약예치금 및 청약통장 가입일 및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국부동산원 → 청약통장 가입내역 → 인쇄 / 이용시간 09:00 ~ 17:30] ※ 모집공고 예정일기준 예치금 충족시 청약가능
	○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 팩스 또는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발급)
내국인	○		① 신분증 사본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여권 : 여권정보증명서)
	○		②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용도:주택공급신청용)
	○		③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	본인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날인필수
	○		④ 주민등록(표)등본 1부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	⑤ 주민등록(표)등본 1부	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 전체포함, 세대구성 및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		⑥ 주민등록(표)초본 1부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증	본인	•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
	○		② 거소사실증명	본인	• 재외동포 신청의 경우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법인	○		①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재직회사	• 법인 신청의 경우 제출
	○		② 법인등기부등본	재직회사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